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¹⁾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의 경우 단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최대강수량을 경신하며 수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이러한 극한호우²⁾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사방사업 설계 시 설계홍수량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
 - 최대홍수유출수량 계산에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만 반영 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추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1) 집중호우 : 보통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을 경우

2) **극한호우** : 강수량 총량이 많은 걸 넘어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로서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임('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를 동시에 충족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일 경우)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5)나) 중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된”을 “합리식(合理式)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한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된 결과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제3조 관련) 1. 설계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도면의 제도(製圖)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공작물도 가) (생략) 나) 설계홍수량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0배 이상 5.0배 이하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제3조 관련) 1. 설계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도면의 제도(製圖)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공작물도 가) (생략) 나) 설계홍수량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合理式) 또는 <u>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한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된 결과 중 최대 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0배 이상 5.0배 이하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u> (이하생략)